

제 1872 호
1995. 1.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최 병 철 우
편집인 : 공 보 관 신 동 우
전화 : 731-8111~3
인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화 : 273-8111~3

시 보

차

담당자	공보국장	공보부장	공보담당	공보관	결 정 일 제
	레	홍	경	철	동

- 조 려
 - 제 3150 호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 3
 - 제 3151 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5
 - 제 3152 호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 7
- 고 시
 - 제 1994-457 호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결정 9
 - 제 1994-458 호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 10
 - 제 1994-459 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10
 - 제 1995- 1 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녹지)실시설계변경인가 11

(이면계속)

공	한	백	홍	경	철	동	우			
관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새물결 새바람 희망찬 신한국”

0001

- 공 고
 - 제 1994-427 호 KS표시정지처분 12
- 구 고 시
 - 제 1994- 6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중랑) 12
 - 제 1994- 66 호 조합아파트사업승인(강남) 17
 - 제 1994- 63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실시계획인가에따른고시(서초) 17
 - 제 1994- 60 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실시계획변경인가(서초) 17
 - 제 1994- 59 호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결정에따른지적승인(서초) 18
 - 제 1994- 58 호 민영(조합)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초) 18
 - 제 1994- 65 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송파) 19
 - 제 1994- 50 호 도시계획사업(덕수공원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관악) 19
 - 제 1994- 6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공지)지적승인및고시(강동) 20
 - 제 1994-10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20
 - 제 1994-10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21
 - 제 1994-10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성북) 22
 - 제 1994- 51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관악) 22
 - 제 1994- 7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강동) 23
 - 제 1994- 66 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정정(송파) 23
 - 제 1994- 4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신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관악) 23
 - 제 1994- 74 호 주택건설사업자동료발소고시(강서) 24
 - 제 1994-327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은평) 25
 - 제 1995- 1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성북) 32
 - 제 1995- 1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서대문) 32
- 구 공 고
 - 제 1994-268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송파) 33
 - 제 1994-288 호 전문건설업면허실효공고(관악) 33
 - 제 1994-431 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변경시행허가를위한공람공고(서초) ... 34
 - 제 1994-262 호 전문건설업면허갱신(도봉) 34
 - 제 1995- 1 호 전문건설업면허취소공고(관악) 35
 - 제 1995- 1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동대문) 35
 - 제 1995- 1 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자진반납)공고(서초) 36
- 한강관리사업소고시
 - 제 1994-148 호 하천점용허가 36
 - 제 1994-149 호 하천점용허가 37
 - 제 1994-150 호 하천점용허가 37
 - 제 1994-151 호 하천점용허가 38
 - 제 1994-152 호 하천점용허가 38
 - 제 1994-153 호 하천점용허가 39
 - 제 1994-154 호 하천점용허가 39
- 공원녹지관리사업소공고
 - 제 1994-17 호 도시공원시설관리위탁공고 40
- 인 사 발령

조 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5. 1. 10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준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3150호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복무선서) 공무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4조(봉사) ①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사를 분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자인 주민의 수임자로서 항상 주민의 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무원은 모든 업무를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친절하며,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창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며,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준수) ①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해직공무원의 연장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및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

<p>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12조(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제13조(휴가)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p>	<p>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제14조(위임) 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별표 1>

선 서 문

선 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이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

대 내 관 계	대 외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와 더불어 공무원의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 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관한 제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무원의 근무시간·휴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에 위임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공무원 복무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제규정을 교육자치의 취지와 실정에 맞게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봉사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함(제4조)
- 공무원의 창의와 성실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공무원의 근무시간·휴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에 위임함

(제12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5. 1. 10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준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151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민학교(남부)중 “서울문교 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신대림국민학교”란을 국민학교(북부)중 “서울노일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녹천국민학교”란을 국민학교(강서)중 “서울동양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동명국민학교”와 “서울동원국민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국민학교(남부)

54	서울신대림국민학교	영동포구 대림동 970-1
----	-----------	----------------

국민학교(북부)

80	서울녹천국민학교	노원구 월계동 316-4
----	----------	---------------

국민학교(강서)

53	서울동명국민학교	강서구 가양동 1272
54	서울동원국민학교	강서구 등촌동 54-6

〈별표 2〉의 중학교(북부)중 “중계중학교”란 다음에 “녹천중학교”와 “노일중학교”란을, 중학교(강서)중 “삼정중학교”란 다음

에 “화원중학교”, “등원중학교”, “동명중학교” 및 “성재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중학교(북부)

38	녹천중학교	노원구 월계동 247
39	노일중학교	노원구 상계동 산 95-1

중학교(강서)		
25	화원중학교	강서구 화곡동 산 144-4
26	동원중학교	강서구 등촌동 83-9
27	동명중학교	강서구 가양동 1282
28	성재중학교	강서구 가양동 68-7
<p><별표 3>의 고등학교중 “서초전자공업고등학교”란 다음에 “한강전자공업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고등학교		
74	한강전자공업고등학교	영등포구 양평동4가 315
<p><별표 7>의 유치원(동부)중 “서울중곡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동원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강동)중 “서울잠일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고명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서부)중 “서울충계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창천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남부)중 “서울운중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두산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중부)중 “서울재동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충무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p>		
유치원(동부)		
6	서울동원국민학교병설유치원	중랑구 망우동 214-4
유치원(서부)		
5	서울창천국민학교병설유치원	마포구 노고산동 산 33-1
유치원(남부)		
4	서울두산국민학교병설유치원	구로구 독산동 1002-5
유치원(중부)		
5	서울충무국민학교병설유치원	중구 장충동 173-7
유치원(강동)		
6	서울고명국민학교병설유치원	강동구 명일동 296-1

유치원(강서)		
7	서울내발산국민학교병설유치원	강서구 발산동 707
유치원(동작)		
4	서울신남성국민학교병설유치원	동작구 사당동 199-1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이유 및 주요골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8%;"> <p>1. 개정이유</p> <p>서울특별시립으로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7개원을 1995학년도 제1학기 개교 예정으로 각각 신설함.</p> <p>2.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학교 4개교를 신설함(별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학교명 : 신대림, 녹천, 등명, 등현 ○ 중학교 6개교를 신설함(별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학교명 : 녹천, 노일, 화원, 등원, 등명, 성재 ○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함(별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학교명 : 한강전자공예 ○ 병설유치원 7개원을 신설함(별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유치원명 : 동원, 창천, 두산, 충무, 고명, 내발산, 신남성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 각종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5. 1. 10 서울특별시교육감 이준해 ㉔</p> <p>●서울특별시조례제3152호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 수수료징수조례</p> </div> <div style="width: 48%;">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해당 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p> <p>제4조(2통이상의 수수료등)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중 2개 사항 이상을 일괄하여 청구할 때에는 매사항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p> <p>제5조(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6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도서 징수한다. 다만, 학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제7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 등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div> </div>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및중·고등학교전·편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별 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 각종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단위: 원)

종 류	기 준	수 수 료	비 고
<제증명수수료>			
1. 신원에 관한 사항			
가. 재직, 경력 및 퇴직에 관한 증명	1통	400	
나. 연수 및 이수에 관한 증명	1통	400	
다. 경기입상에 관한 증명	1통	400	
2. 중·고등학교 학생 제증명에 관한 사항			
가. 재학증명	1통	300	
나. 졸업(예정)증명	1통	300	
다. 수료(예정)증명	1통	300	
라. 성적(석차연명부포함)증명	1통	300	
마. 퇴학(제적)증명	1통	300	
바. 합격(입학)증명	1통	300	
사. 휴학(복학)증명	1통	300	
아. 생활기록부(학적부)증명	1통	300	
3. 회계에 관한 사항			
가. 몰품납품 및 공사사실등에 관한 증명	1통	600	
나. 원천세 공제에 관한 증명	1통	400	
다. 교육비납입증명	1통	400	
라. 학비감면증명	1통	400	
마. 미확정 채권 양도에 관한 증명	1통	600	
바. 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600	
사. 공유재산에 관한 증명	1통	600	
4. 학원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			
가. 학원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	1통	600	
5. 기타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가. 기타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400	

(단위: 원)			
종 류	기 준	수 수 료	비 고
<증명이외의 수수료>			
1. 중학교 입학 및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1건	1,000	
2. 신고 및 신청등에 관한 사항			
가. 법인 설립허가 및 변경신청	1건	600	
나. 입찰참가신청	1건	600	
다.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600	
라.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	600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가. 문서(그림, 사진, 도면 포함) 및 필름(라 이크로필름 포함) 열람	1건 1회	100	
나. 문서(그림, 사진, 도면 포함) 복사	1매	10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현행 각종 수수료징수조례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용하고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복사 요청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법령을 목적조항에 명시함(제1조).
- 일반인이 행정정보공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별표).
- 제증명에 관한 사항 중 수수료를 징수하는 증명의 종류를 보다 세분하여 규정함(별표).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및중·고등학교전·편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를 각각 폐지함(부칙).

료징수조례를 각각 폐지함(부칙).
○ 사회단체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제14183호 '94.3.2)으로 수수료징수 근거가 없어진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부칙).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4-457호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 구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5. 1. 10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 구역 결정 조서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적(㎡)	비 고
도시계획사업 (시가지조성사업)	계	2개지구	5,465,000	
	특성지구	성동구 성수동 1가 일대	678,000	○ 성수동지역 일대를 첨단시설, 레저기능의 수반 공간으로 구성하고 ○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함
구역결정	상암지구	마포구 상암동 197 일대	4,787,000	○ 상암동지역 일대를 대복교류 기능 및 서북부 지역 부도심으로 개발하고 ○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함

○ 도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마포구·은평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서울특별시고시제1994-458호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5. 1. 10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조서

지구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위 치	고도제한	면적(㎡)	위 치	고도제한	면적(㎡)	
경북궁	계		41,228			41,228	
주변고도지구 (최고고도)	종로구 소격동 165 일대	현 지반고로부 터 25m 이하	27,428	종로구 소격동 165 일대	현 지반고로부 터 16m 이하	27,428	경북궁 근접권에서 행각을 연결하는 가시권이 확보되도록 주변 지역과 동일하게 조정
	종로구 재동 83 일대	현 지반고로부 터 20m 이하	13,800	종로구 재동 83 일대	현 지반고로부 터 16m 이하	13,800	

○ 도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종로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서울특별시고시제1994-459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

계획과와 영등포구, 동작구, 은평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 1. 10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결정	당산제2어린이공원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23 일대	2,854	3,329.4	증 475.4	해제 786.6m ² 지정 1,262m ²
"	노량진근린공원	동작구 대방동 350-6 일대	395,386	394,948	감 438	대방동 사부소 신축
"	용봉정근린공원	동작구 흑석동 114-12	78,500	79,094	증 594	대채공원지정
"	진관근린공원	은평구 진관외동 산 132-1 외 5필지	978,632	983,791	증 5,159	통일로변 인공폭포 조성
"	봉산자연공원	은평구 신사동 237-148	3,806,447	3,807,002	증 555	어린이공원용지를 봉산자연공원에 편입

○ 도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 동작구, 은평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 서울특별시고시제1995-1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녹지) 실시설계 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429호(89. 7. 31)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19호(93. 12. 27)로 변경인가된 가양하수종말처리장 및 가양하수종말처리장

녹지조성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하수도·녹지)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하수처리과, 종합건설본부(토목2부) 및 강서구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 10
서울특별시장

구분	가양종말하수처리장		가양하수종말처리장 녹지조성사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서구 마곡동 74 일대	변경없음	강서구 방화동 106 일대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양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 공사		가양하수처리장 시설녹지조성 공사	

구 분	가양종말하수처리장		가양하수종말처리장 죽지조성사업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전	변 경 후
3. 면적 또는 규모	부지면적 610,000㎡시설용 량 100만본/일(2 차처리)	변경없음	시행면적 45,000㎡	변경없음
4. 시행자의 성명·주소	서울특별시장(중 합건설본부장)	"	서울특별시장(중 합건설본부장)	"
5. 사업의 착수·준공 예정일	인 가 일 로 부 터 1994. 12	인 가 일 로 부 터 1995. 4	인 가 일 로 부 터 1994. 12	인 가 일 로 부 터 1995. 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 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변 경 없 음	변 경 없 음	변 경 없 음	변 경 없 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변 경 없 음	변 경 없 음	변 경 없 음	변 경 없 음
8.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 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 경 없 음	변 경 없 음	변 경 없 음	변 경 없 음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4-427호
KS표시정지처분
산업표준화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KS표
시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 1. 10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대림솔더통신
2. 대표자 : 이연호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4-20
4. 규격번호 : KSC 2508
5. 규격명 : 수지일 땀남

6. 종류등급 : 플렉스B RS-60B-1.6
7. 표지정지 사유 : 규격 미달
8. 표지정지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구 고 시

●중랑구고시제1994-60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1동 200-81 의
23필지에 대하여 중랑구공고 제1994-228
호(94. 12. 16)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한바, 이의신청이 없
어
2. 도시계획법 제25조·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제27조, 서울특별시행정전환위임조
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 10

중랑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1동 306~200간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시행

명칭: 상봉1동 306~200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폭 6m, 연장 130m

라. 사업시행자: 중랑구청장

마. 사업착공 및 준공연월일: 인가일로부터 36개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 별첨 토지조서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조서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중랑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중랑구 면목동 777-1
 사업의 종류: 상봉동 306~200간 도로개설공사

제 1872 호

50-14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자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상봉동 305-6	대	70	70	대	박봉수	상봉동 305-3				
2	306-9	대	30	30	대	홍순주 외 1인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삼천리 101-1008	한 일 은 행 한영약품(주) 동광제약(주)	중구 남대문로2가 130 관악구 남현동 1056-16 중구 명동1가 60	근저당설정 " "	
3	306-10	대	20	20	대	허영하	구로구 개봉동 403-151	극 민 은 행 (주) 씨 스타	중구 남대문로2가 9-1 영등포구 여의도동 44- 25	" "	
4	308-19	대	1	1	대	"	"				
5	306-12	대	5	5	대	한광옥 외 1인	상봉동 306				
6	306-13	대	10	10	대	"	"				
7	306-11	대	94	94	대	"	"				
8	200-90	대	4	4	대	김성환	상봉동 200-14	농 업 협 동 조합중앙회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설정	
9	200-91	대	16	16	대	"	"				
10	200-92	대	47	47	대	이규환	상봉동 200-15				

ㄴ

ㄹ

1995.1.10

50-15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	200-81	대	116	116	대101 도 15	박명호	상봉동 200	(주)국제상호 신용 금고	중구 명동2가 104	근처당설정	
12	200-93	대	17	17	대	"	"	"	"	"	
13	200-94	대	15	15	대	황을주	상봉동 200-42	상봉 1 동 새마을 금고	상봉동 268-2	"	
14	200-95	대	44	44	대	김명옥	상봉동 200-44	"	"	"	
15	200-96	대	53	53	대	박예단 외 1인	상봉동 200-45				
16	200-98	대	12	12	대	"	"				
17	200-103	대	6	6	대	김진규	"				
18	200-104	도	9	9	도	연석인	노원구 상계동 173- 1475				
19	200-105	도	2	2	도	"	"				
20	200-106	도	12	12	도	김정순 외 1인	상봉동 322				
21	200-99	대	24	24	대	김용배	상봉동 200-38				
22	200-100	대	16	16	대	노영재	동작구 삼도동 262-1				
23	200-101	대	22	22	대	이원광	상봉동 200-23				
24	200-102	잡	118	118	잡	지윤성	상봉동 200-53				

제 1872 호

시

보

1995.1.10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중랑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중랑구 면목동 777-1
 사업의 종류: 상봉동 306~200간 도로개설공사

50-16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 의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상봉동 305-5	건물	슬래브 / 벽돌	6	주택	박봉수	상봉동 305-3				지하 2㎡ 지상 4㎡
2	306-6	"	와 짐 / 불록	4	"	최명수	상봉동 306-6				
3	306	"	슬레이트 / 벽돌	38	"	한광익 외 1인	상봉동 306				
4	200-42	"	와 짐 / 연와조	4	"	황윤주	상봉동 200-42	상 봉 1 동 새마을 금고	상봉동 268-2	근저당설정	
5	200-44	"	"	14	"	김명옥	상봉동 200-44	"	"	"	
6	200-45	"	"	31	"	박예단 외 1인	상봉동 200-45				
7	200-38	"	"	5	"	김용배	상봉동 200-38				
8	200-23	"	"	2	"	이원광	상봉동 200-23				
9	200-15	"	와 짐 / 벽돌	30	"	이규환	상봉동 200-15				
10	200-80	"	"	1	"	박명호	상봉동 200	(주)국제상호 신용 금고	중구 명동2가 104	근저당설정	
11	200	"	"	49	"	"	"	"	"	"	35.3 (무허가)

제 1872 호

시

부

1995.1.10

●강남구고시제1994-66호

조합아파트사업승인

- 1. 강남구 역삼동 761-10 외 9필지 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 10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승인내역

- (1) 사업명: 조합아파트 사업승인
- (2) 사업주체: 대림역삼지장 및 지역주택조합
- (3) 사업시행위치: 강남구 역삼동 761-10 외 9필지
- (4) 대지면적: 3,456.7㎡
- (5) 사업규모: 아파트-지하2층, 지상 18층, 1동, 129세대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노인정
- (6) 건축연면적: 15,179.125㎡
- (7) 사업기간: 94. 12~96. 12

나. 도면: 별첨과 같음(생략)

다. 기타: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 비치 보관

●서초구고시제1994-63호

도시계획사업(시장) 실시계획인가에

따른고시

- 1. 우리 구 반포동 1313에 대하여 두산건설(주)부터 도시계획사업(시장)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1994-370호(94. 11. 17)로 14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서류공람 및 의견 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 2. 관련도서는 서초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 10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1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도시계획사업(시장)
- (2) 명칭: 반포프라자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주소: 강남구 논현동 105-7
- (2) 성명: 두산건설(주) 대표이사 정한균

라. 사업의 규모

- (1) 사업시행 면적: 3,245㎡
- (2) 건물규모: 지상 6층, 지하 6층, 연면적.26,120.60㎡
- (3) 용도: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일: 95. 1
- (2) 준공예정일: 96. 12

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서초구고시제1994-60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 1. 외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외교안보연구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련 도서는 서초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 1. 10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초구 서초동 1376-2 일대(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 외교안보연구원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없음) - 서초구 서초동 1376-2 - 외무부장관(외교안보연구원장) 라.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생략(변경 없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기정: 89. 4. 13~94. 12. 31 - 변경: 89. 4. 13~95. 12. 31 바. 사업시행규모(변경 없음) ○ 대지면적: 53,585.3㎡ ○ 건축규모 - 건축면적: 3,505.49㎡		- 건축연면적: 15,490.24㎡ 사.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치 도서와 같음. ◎서초구고시제1994-59호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 결정에 따른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94. 6. 13)로 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 10 서 초 구 청 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 지적승인 조서			
지구명	구 분	위 치	면적(㎡)
도시설계지구	테헤란로 제1지구	서초구 테헤란로 주변 일대	449,946
종전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임.			
나. 관계도서: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서초구고시제1994-58호 민영(조합)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조합)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1. 10		서 초 구 청 장 1. 사업명: 민영(조합)주택건설사업 2. 사업자: 잠원지구 연합 주택조합장 이진남 외 146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건설위치: 서초구 잠원동 54-7 외 7필지 나. 대지면적: 3,801.00㎡ 다. 건축면적: 950.13㎡ 라. 건축연면적: 19,937.91㎡ 마. 건설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8	

- 층, 1동 166세대 및 부대부리시설
- 4. 다른 법률의제: 도로법 제40조
- 5. 사업시행기간: 1995. 1~1996. 1

●송파구고시제1994-65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인가

1. 송파구고시 제1993-2호(93. 1. 16)로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송파구고시 제1994-24호(94. 5. 14)로 변경인가 고시된 송파구 장지동 214-2 외 2필지 배다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변경(기간 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410-3385~8)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 10

송 파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송파구 장지동 214-2 외 2필지(변경 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 사업의 명칭: 배다니 종합사회복지관
-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없음)
 - 사업시행 면적: 3,245㎡
 - 건축면적: 562.8㎡
 - 건축연면적: 6,318.02㎡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없음)
 - 주소: 송파구 잠실동 230-2
 - 성명: 사회복지법인 배다니 종합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최이식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당초: 인가일로부터 94. 12. 31까지
- 변경: 인가일로부터 95. 12. 31까지
- 바. 수용할 토지: 변경 없음.

●관악구고시제1994-50호

도시계획사업(덕수공원조성)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6호(91. 5. 2)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낙성대 지구내인 관악구 봉천동 산 53-1 일대의 덕수공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도시계획법 제25조·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80-3395~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 1. 10

관 악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관악구 봉천동 산 53-1 외 12필지
- 나. 사업면적: 66,215㎡(변경 없음)
-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당초: 도시계획사업(충무공원)
 - 변경: 도시계획사업(덕수공원)
- 라. 사업기간
 - 당초: 91. 6. 1~94. 12. 31
 - 변경: 91. 6. 1~95. 4. 30
- 마. 사업시행자
 - 당초: 덕수이씨 정정공파 종회 대표 이충환
 - 변경: 덕수이씨 풍암공파 종회 대표 이조영
- 바. 사업내역: 생략(변경 없음)
- 사. 토지조서: 생략(변경 없음)

<p>●강동구고시제1994-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공지) 지적 승인및고시</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56호(94. 10. 31) 및 강동구고시 제1994-67호(94. 12. 29)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공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p>		<p>임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면은 강동구 도시정비과(480-1385~7), 지적과와 관할 동사무소(하일동, 둔촌2동, 고덕2동)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5. 1. 10 강 동 구 청 장</p>						
<p>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조서</p>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고
신설	중로	2	362	15	520	강동구 하일동 368-8	강동구 하일동 348-25	
기정	소로	2	-	8	70	강동구 둔촌동 산 17	강동구 둔촌동 102	
변경	중로	3	337	12	70	강동구 둔촌동 산 17	강동구 둔촌동 102	
신설	소로	3	-	6	40	강동구 하일동 366-4	강동구 하일동 366-1	
<p>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p>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신 설	공 공 공 지	강동구 하일동 642-1 일대		3,270				
<p>다. 관계도면: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지적과 및 관할 동사무소 비치 도면과 같음.</p>		<p>●성북구고시제1994-104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p> <p>1. 우리 구 관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920-338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5. 1. 10 성 북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 성북구 안암동5가 1-2 일대</p> <p>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p> <p>다. 사업의 명칭: 고려대학교 시설확충</p> <p>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p> <p>(1) 사업시행 면적: 632,762m²(도시계획 결정 면적)</p> <p>(2) 사업내역</p> <p>● 기존: 동소: 82동</p> <p style="text-align: right;">연면적: 245,763.91m²</p> <p>마. 사업시행자 주소: 성북구 안암동5가 1-2 일대</p>				

성명: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 용식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금회 변경사항)					
사업명	위치	규모(m ²)	사업기간		비고
			당초	변경	
학군단 신축 인촌 기념관 주차빌딩 증축	안암동5가 1-2 일대	16,177.14	88. 5. 25~ 94. 12. 31	88. 5. 25~ 95. 12. 31	단순공사 기간연장
여자기숙사, 교사숙소 증축	안암동5가 1-2 일대	5,593.1	89. 11. 22~ 94. 12. 31	89. 11. 22~ 95. 12. 31	단순공사 기간연장
서관(씨클룸) 증축	"	501.73	91. 3. 5~ 94. 12. 31	91. 3. 5~ 95. 12. 31	"
의과대학, 부속병원, 체육장, 노천극장, 화장실, 주차빌딩, 학군단신축, 사대신관, 가스봄배설증축, 경영관 및 사대증축, 남자기숙사증축	"	79,698.24	89. 6. 17~ 94. 12. 31	86. 6. 17~ 95. 12. 31	"
정경관 증축 이공대 서관증축, 이공대 실험동 신축	"	13,414.29	92. 6. 9~ 94.12. 31	92. 6. 9~ 95. 12. 31	"
사. 위치 및 평면 계획도: 별첨(도면 생략) 아. 토지소유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수용할 토지 없음) ●성북구고시제1994-105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 1. 우리 구 관내 학교법인 승가학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920-338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 10 성북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성북구 안암동5가 157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 명칭: 중앙승가대학교 시설 증축 라. 사업시행 규모 1) 사업시행 면적: 23,575m ² (도시계획 결정 면적)					
2) 사업내역					
사업명	위치	규모(m ²)	사업기간		비고
			당초	변경	
기존건물(2동)	안암동 5가 157 일대	2,588.7	-	-	

사 업 명	위 치	규모(㎡)	사 업 기 간		비 고
			당 초	변 경	
부속시설(개운사) 이전	안암동5가 157 일대	484.75	90. 11. 6~ 94. 12. 31	90. 11. 6~ 95. 12. 31	단순공사 기간연장
운동장 조성	"	2,830	"	"	"
교사 증축	"	3,816.6	-	-	(92. 2. 1준공)

마. 사업시행자 주소: 성북구 안암동5가 157
 성명: 학교법인 승가대학 이사장 서황통
 바. 위치 및 평면계획도: 별첨(도면 생략)

●성북구고시제1994-10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1. 10

성 북 구 청 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가. 성명: 성북아리랑재건축조합장 김용규

나. 주소: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527-36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가. 위치: 성북구 정릉동 587 외 311필지

나. 면적

— 대지면적: 33,400.86㎡

— 건축면적: 7,189.774㎡

— 도로후퇴면적: 2,059.29㎡

— 기부채납면적: 101.85㎡

— 연면적: 121,430.73㎡

다. 규모: 아파트 13동 지하 2, 지상 15~20층 9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1995. 1~1997. 12

5. 도시계획결정 사항

구 간		연장(m)	기정(m)	변경(m)
시 점	종 점			
돈암동 536-19	정릉동 113-64	145	15	20
정릉동 587-42	정릉동 567-7	140	10	15
정릉동 567-7	정릉동 604-66	150	6	8

●관악구고시제1994-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우리 구 민영주택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1995. 1. 10

관 악 구 청 장

1. 사업명: 봉천연립 재건축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봉천연립 재건축 조합장 이호진

3. 사업시행위치 및 규모

가. 위치: 관악구 봉천동 1531-10 외 3필지

나. 대지면적: 2,625.50㎡
 다. 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라. 규모: 지하 1층, 지상 10층 아파트 1동 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연면적: 9,646.385㎡
 5. 사업기간: 1995. 1.~1996. 5
 6. 의제처리사항: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제15조, 수도법 제12조, 측량법 제25조, 하수법 제13조

●강동구고시제1994-70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1. 10

강 동 구 청 장

1. 사업명: 길동 신아연립 재건축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2. 사업주체: 신아연립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김용제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강동구 길동 382-6·7·8

나. 대지면적: 1,522.80㎡
 다. 연면적: 4,405.57㎡
 라.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아파트 49세대 1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1994. 12~1996. 3
 5. 설계도서: 생략
 6. 기타 의제처리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송파구고시제1994-6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정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1994-63호(94. 12. 28)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 도시정비과(410-3385~7), 지적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니다.

1995. 1. 10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정정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학교용지(국민학교)	송파구 거여동 12	11,324.2	면적(감) 50㎡
정 정	학교용지(국민학교)	송파구 거여동 12	11,274.2	

나. 관계도면: 비치 장소 도면과 같음(도면변경 없음)

●관악구고시제1994-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신설·변경결정 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의3 제1호 및 제9조제1항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와 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 10					관악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등급	소로	3류	6	57	봉천4동 1593-2	봉천4동 1593-15	관악경찰서 진입 도로
신설	소로	3류	6	70	봉천동 산 133-3	봉천동 산 133-10	상도근린공원
신설	소로	3류	6~7	220	봉천10동 457-135	봉천10동 457-125	미개설사도→도시 계획도로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3류	12	120	신림본동 1637-12	신림본동 1637-26	
변경	소로	3류	4	120	"	"	폭원 축소
기정	소로	2류	8	150	신림9동 808-15	신림동 261-4	
변경	소로	2류	8	150	신림9동 1517-18	신림동 1516-3	지번변경 사유지 일부 편입
기정	소로	2류	6~7	144	봉천6동 21-15	봉천6동 24-10	
변경	소로	2류	8	144	"	"	폭원조정 및 위치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공용의 청사	봉천동 1593-3	4,770.8㎡	4,546.3㎡	감 224.5㎡(관악소방서)		
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및 고시							
구분	등급	유별	폭(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2류	8	184	신림동 산 114-3	신림동 산 117	신림12동 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진입도로
마. 관계도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와 지적과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도서 생략).					●강서구고시제1994-74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고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자진반납 신청에 의거 등록말소 처분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3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1. 10				강 서 구 청 장		
○ 등록말소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말소일자	말소사유
1	92-14-5	예화건설(주)	맹춘태	화곡동 976-7	94. 12. 30	자진반납
●은평구고시제 1994-327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 니다. 1995. 1. 10 은 평 구 청 장		
1.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1992-32호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된 녹번 서 근린공원조성에 대하여 도시계획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 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녹번 서 근린공원조성) 나.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녹번 서 근린공원 조 성(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 ○ 사업시행지: 은평구 녹번동 85-4 일대 16,110㎡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다. 사업의 규모						
시 설 명 칭		당 초	변 경	비 고		
문화예술회관 1동 (지하 2층, 지상 2층)	바닥면적	2,185.50㎡	2,951.56㎡			
	연 면 적	5,392㎡	8,123.27㎡			
야 외 무 대		220㎡	855㎡			
주 차 장	육 내	1,800㎡ (문화예술회관 지하)	1,734㎡	(37대)		
	육 외	—	1,110㎡	(58대)		
기 타		—	—	산책로 등 공원시설		
라. 사업의 시행자: 은평구청장(대행자: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생략		
마. 사업의 착수 및 완공예정일 [당초: 인가일로부터 94. 12. 31까지 변경: 인가일로부터 96. 7. 31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 목·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도시계획시설(녹번 서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시설표 총괄표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 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9,945	9,521.5	1	2,185.5	5,392	-	29,945	10,791	1	2,951.56	8,123.27	-	○ 규모변경 -시설면적: 1,269.50㎡ 증 -바닥면적: 766.06㎡ 증 -연면적: 2,731.27㎡ 증
기 반 시 설	소계	8,375	5,076	-	-	-	6,046	2,747	-	-	-	-	○ 규모변경 △2,329㎡
	도로	4,778	1,479 (3,299)	-	-	-	4,871	1,572 (3,299)	-	-	-	-	○ 규모변경 △93㎡ 증
	황장	3,597	3,597	-	-	-	1,175	1,175	-	-	-	-	○ 규모변경 △2,422㎡
	조경 시설	1,000	1,000	-	-	-	587	587	-	-	-	-	○ 규모변경 △413㎡
유희 시설	790	790	-	-	-	790	790	-	-	-	-		
운동 시설	220	220	-	-	-	220	220	-	-	-	-		
교양 시설	2,405.5	2,405.5	1	2,185.5	5,392	-	5,307	5,307	1	2,951.56	8,123.27	-	○ 규모변경 -시설면적: 2,901.50㎡ 증 -바닥면적: 766.06㎡ 증 -연면적: 2,731.27㎡ 증
편익 시설	30 (1,800)	30 (1,800)	-	-	-	-	1,140	1,140 (1,734)					○ 규모변경 -옥외 1,110㎡ 증 -옥내 (△66㎡) -주차대수 95대 · 옥외: 37대 · 옥내: 58대

50-26

제 1872 호

시

부

1995.1.10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관리 시설	(108)	(108)	(1)	(108)	(108)	-	-	(207)	(1)	(125)	(125)	-	○ 문화예술회관내(17㎡ 증)									
녹지·기타	17,124.5	-	-	-	-	-	15,855	-	-	-	-	-	△1,269.50㎡									
시 설 조 서 (변경결정)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 위	지 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 호	부 위	지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타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총 면 적	합 계				29,945	9,521.5		1동		2,185.5	5,392						1동	2,951.56	8,123.27		- 시설면적: 1,269.50㎡ 증 - 바닥면적: 766.06㎡ 증 - 연면적: 2,731.27㎡ 증	
기 도	소 계				8,375	5,076															△2,329㎡	
	로		전지역		4,778	1,479 (3,299)																○ 규모변경 93㎡ 증
반 시 설	광 장		소 계		3,597	3,597																△2,422㎡
	광 장	(1)	2	85-4 대	850	850																○ 규모변경 △ 202㎡
	광 장	(2)	2	85-1 대	600	600																○ 패저 △600㎡

제 1872 호

시

단

1995.1.10

50-28

구분	시 설 명	부 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위 치	부지 면적 (m ²)	시설 면적 (m ²)	구조	규모	건축물 (m ²)		공 작 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 면적 (m ²)	시설 면적 (m ²)	구조	규모	건축물 (m ²)			공 작 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기 반 시 설	광 장 (3)	2	100-80입	1,000	1,000														○ 쾌지 △1,000m ²	
	주진입부(1)		86-1 대	420	420														○ 쾌지 △420m ²	
	주진입부(2)		100-76입	156	156														○ 쾌지 △156m ²	
	부진입부(1)		100-84입	50	50					2-2	100-84입	50	50							
	부진입부(2)		100-60입	57	57					2-3	100-60입	57	57							
	부진입부(3)		100-83입	84	84					2-4	100-83입	84	84							
	휴게광장(1)	3	100-81입	130	130						3-1	100-81입	86	86						○ 규모변경 △44m ² -파고라 1조 -벤치 4조
	휴게광장(2)	3	100-92입	250	250						3-2	100-92입	250	250						-파고라 1조 -벤치 9조
조 경 시 설	소 계			1,000	1,000							587	587						○ 건물배치변 경에 따른 변 경 △ 413m ²	
	녹지법면		85-4 대	600	600														○ 쾌지 △600m ²	
	녹지법면										100-81입	463	463						○ 신설 463m ² 증	

제 1872 호

시

부

1995.1.10

0028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 시설	잔디밭		100-80입	400	400															○ 레저 △400㎡	
	잔디밭										100-81입	124	124							○ 신설 124㎡ 중	
	유희소			790	790							790	790								
	어린이놀이터	5	100-85입	790	790					5	100-85입	790	790								○ 조합놀이대
	운동소			220	220							220	220								
	체력단련시설	6	100-85입	90	90					6	100-85입	90	90								○ 18종 18조
	썬룸장	7	100-83입	130	130					7	100-83입	130	130								
교양 시설	소계			2,405.5	2,405.5		1동	2,185.5	5,392			5,307	5,307		1동	2,951.56	8,123.27			- 시설면적 : 2,901.50㎡ 중 - 바닥면적 : 766.06㎡ 중 - 연면적 : 2,731.27㎡ 중	
	문화예술회관	1	100-81입	2,185.5	2,185.5	철근 Conc	1동	2,185.5	5,392	1	100-81입 일대	4,452	4,452	철근 Conc 라면 조	1동 지상 2층 지하 2층	2,951.56	8,123.27			○ 규모변경 - 시설면적 : 2,266.50㎡ 중 - 바닥면적 : 766.06㎡ 중 - 연면적 : 2,731.27㎡ 중	
	야외무대	4	100-81입	220	220					4	100-81입	855	855							○ 규모변경 - 시설면적 635㎡ 중	

50-29

제 1872 호

시

부

1995.1.10

50-3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익시설	소계			30 (1,800)	30 (1,800)							1,140	1,140 (1,734)							○ 규모변경 - 옥외: 1,110㎡중 - 옥내: (△66㎡) - 주차대수 95대 · 옥외 37대 · 옥내 58대		
	주차장	9	100-79입	(1,800)	(1,800)								(1,734)							○ 규모변경 - 문화예술회관내 (△66㎡) 58대		
	약수터	8	100-60입	30	30					8	86-6 권	1,110	1,110							○ 신설 1,110㎡ 중 37대		
관리시설	소계			(108)	(108)	(1)	(108)	(108)					(207)			(125)	(125)			(99㎡ 중)		
	관리사무실			(108)	(108)	(1)	(108)	(108)					(125)			(125)	(125)			(17㎡ 중)		
	휴지통											전지역	(14)		14기					○ 신설		
	안내판											전지역	(5)		5기					○ 신설		
녹지및기타	공원 등											전지역	(63)		63등					○ 신설		
	소계			17,124.5								15,855								△1,269.50㎡		
	녹지		전지역	17,124.5								전지역	15,855							△1,269.50㎡		

제 1872 호

시

부

1995.1.10

도 로 조 서 (변경결정)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합	계			857	1,479			
					853.5	1,572			
당초 폐지	3	소	계		49.0	147.0			
당초 폐지	소	3	1	3.0	49.0	147.0	화물차진입로	주진입로(1)	야외무대
당초 폐지	4	소	계		808	1,332			
					853.5	1,572			
당초 변경	산	4	1	2.0	130.0	260.0	시설간연결로	문화예술회관후면부	85-3도 분기점
당초 변경				2.5	96.0	240.0	"	야외무대후면부	"
당초 변경			2	1.5	100.0	150.0	산책로	산책4-1 분기점	산책4-1 분기점
당초 변경			3	2.0	70.0	140.0	진입로	85-3도 분기점	문화예술회관좌측면부
당초 변경			4	2.0	40.0	80.0	"	산책4-1 분기점	산책4-4 분기점
당초 변경					1.0	60.0	60.0	산책로	야외무대
당초 변경			5	2.0	20.0	40.0	"	산책4-25 종점	"
당초 변경					2.0	97.0	194.0	시설간연결로	부진입부(1)
당초 변경			6	2.0	106	212.0	"	"	85-3도 분기점
당초 변경					1.0	42.0	42.0	산책로	산책4-5 분기점
당초 변경			7	2.0	75.0	150.0	진입로	부진입부(2)	산책4-5 분기점
당초 변경			8	1.0	78.0	78.0	순환산책로	부진입부(1)	산책4-7 분기점
당초 변경			9	1.0	34.0	34.0	순환산책로	부진입부(2)	부진입부(3)
당초 변경			10	2.0	48.0	96.0	진입로	부진입부(3)	산책4-7 분기점
당초 변경			11	1.9	15.0	15.0	산책로	산책4-10 분기점	어린이놀이터
당초 변경			12	2.0	4.0	8.0	시설간연결로	산책4-10 분기점	모래사장
당초 변경			13	2.0	12.0	24.0	시설간연결로	산책4-7 분기점	휴게광장
당초 변경			14	3.0	6.0	18.0	시설간연결로	산책4-5 분기점	휴게광장
당초 변경			15	0.5	4.0	2.0	시설간연결로	산책4-5 분기점	체력단련시설(1)
당초 변경	16	0.5	4.5	2.2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1)	체력단련시설(2)		
당초 변경	17	0.5	5.5	2.7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2)	체력단련시설(3)		
당초 변경	18	0.5	3.0	1.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3)	체력단련시설(4)		
당초 변경	19	0.5	3.0	1.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4)	체력단련시설(5)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당초	산책	로	20	0.5	2.5	1.25	시설간연결로	체력단련시설(5)	산책4-5 분기점	
당초			21	4.0	12.0	48.0	진입로	100-87도 분기점	어린이놀이터	
당초			변경	22	1.5	2.5	3.75	산책로	야외무대후면	산책4-1 분기점
신설					2.0	12.0	24.0	"	산책4-4 분기점	야외무대
신설			책	23	2.0	10.0	20.0	산책로	산책4-24 분기점	지하주차장입구, 램프 주변
신설				24	2.50	39.5	98.75	산책로	문화예술회관후면 출구계단	야외무대부진입부
신설				25	2.50	40.0	100.0	산책로	산책4-24 분기점	산책4-4 시점
신설				26	2.0	15.0	30.0	산책로	산책4-25 분기점	야외무대
신설				27	3.0	10.0	30.0	진입로	주차장(1)	야외무대
신설	28	1.50		12.0	18.0	진입로	휴게광장(우)	육교		
신설	29	1.00		5.0	5.0	진입로	육교	산책4-8 분기점		

●성북구고시제199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37호(94. 4. 26)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였기를 고시합니다.

1995. 1. 10

성북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 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공원	성북구 돈암동 산 6-1 일대	278,629	309,619	증 30,990	개운근린공원

나.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920-3385-8) 및 시민봉사실(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지적승인 도면: 도면생략(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서대문구고시제1995-1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시고시 제306호(90. 9. 11) 제196호(91. 6. 24) 제188호(92. 6. 11) 서대문구

고시 제1992-42호(92. 6. 27) 제1993-33호(93. 7. 3) 제1994-25호(94. 6. 30)로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되어 도시계획사업 시행중인 우리구 관내 대원동 11-1 일대 학교법인 이화학당 골프연습장설치 취소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 10

서대문구청장

가. 변경사항: 골프연습장설치 1식(조성면적 1,680㎡) 취소

나. 기타사항: 골프연습장 외 5건은 이미 건축준공검사를 필요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별도의 도시계획사업 준공검사를 생략함.

구 공 고

●송파구공고제1994-268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

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이 시행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하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5. 1. 10

송파구청장

가. 공고 및 공람개요

사용개시 연월일	배수구역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합·분류식 여부	비고
94. 7. 14	오금·거여	오금동 97-27~거여동 5-16	분류식	신설
94. 11. 18	탄천	문정동 56-57~문정동 57-8	분류식	개량
94. 12. 15	잠실	잠실동 184-21~잠실동 184-12	합류식	개량
94. 12. 17	잠실	잠실동 181-6~잠실동 184-6	합류식	개량
94. 12. 17	잠실	잠실동 184-9~잠실동 209-10	합류식	개량
94. 12. 19	성내	오금동 118-10~오금동 118-25	분류식	신설·개량
94. 12. 19	성내	오금동 120-7~오금동 120-11	분류식	신설·개량
94. 12. 19	성내	오금동 120-6~오금동 120-21	분류식	신설·개량

나. 공고 및 공람기간: 1995. 1. 10~
1995. 1. 24(15일간)

간내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건설업 면허가 실효되었기 건설업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5. 1. 10

관악구청장

●관악구공고제1994-288호

전문건설업면허실효공고

건설업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

업종 및 면허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면허유효 기간	면허 실효일	실효사유
미장방수 조 적 82-03-97 82-06-17	신양토건(주)	장종명 김천식 박원근	관악구 봉천동 861-8	91.12.18~ 94.12.17	94.12.18	면허 미갱신

업종 및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면허유효 기 간	면 허 실 효 일	실효사유
토 공 02-106 철 콘 10-85 상하수도 82-13-33	일흥토전(주)	김홍열	관악구 남현동 1062-4	91.12.18~ 94.12.17	94.12.18	면 허 미 갱 신

●서초구공고제1994-431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변경
시행허가를위한공람공고

1. 우리구 관내에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변경 시행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련도서는 아래장소에 비치하며 이해관

계인에게 공람하오니,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 10

서 초 구 청 장

가. 공람장소 : 서초구청 건축과
(570-6390~3)

나. 공람기간 : 1994. 12. 31~1995. 1. 13

다.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시행허가에 따른 공람공고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세 부 시 설			비 고
			구 분	기 정	변 경	
				면적 (㎡)	면적 (㎡)	
유통업무 설 비	서초구 양재동 231	공부상 : 24,180.40㎡ 실 제 22,295.00㎡	계	43,385.89	80,968.23	규 모
			사 무 소	9,620.75	32,197.49	지하 3층,
			업 무 시 설	7,109.95	29,158.44	지하 4층
			설 비 관 리 실	2,510.8	3,039.05	→
			점 포	13,855.32	29,329.29	지하 3층,
			관 매 시 설	13,855.32	22,499.97	지하 21층
			전 시 시 설		6,829.32	CORE
			편 의 시 설	19,909.82	19,441.45	면적은 각
			주 차 장	19,174.82	18,666.76	실로 분산
			은 실	189.08	163.00	(분배)
CORE	108.04	-				
휴 게 실	437.88	611.69				

라. 관련도면 :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문건설업 면허를 갱신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5. 1. 10

도 봉 구 청 장

●도봉구공고제1994-262호
전문건설업면허갱신공고
건설업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

업종 및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면허유효기간
철물 82-11-191	한일기업사	박정재	미아동 302-1	94. 12. 17~99. 12. 16
도장 82-05-2	용만기업사	권학자	쌍문동 315-62	94. 12. 19~99. 12. 18

●관악구공고제1995-1호

전문건설업면허취소공고
전문건설업 자진반납이 있어 건설업 면허
를 취소 처리하였기 건설업법시행령 제51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5. 1. 10

관 악 구 청 장

업종 및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취소일자	비 고
철물 83-11-311	(주)정환공영	김정용	관악구 신림동 518-4	94. 12. 30	자진반납
철물 83-11-311	성왕철구(주)	박무서	관악구 봉천동 1629-4	94. 12. 30	자진반납
철콘 92서울10-246	미대건설(주)	윤교석	관악구 봉천동 1596-6	94. 12. 30	자진반납

●동대문구공고제1995-1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1.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한 다음 공공하수도가 완료되었기 하 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면은 동대문구청 하수과에 비치하

어 공고일로부터 15일간 투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 10

동 대 문 구 청 장

공공하수도 설치내역 및 관계도면: 따 로붙임(동대문구청 하수과 비치).

공공하수도설치내역

(동대문구청 하수과)

연번	공 사 명	위 치	공 사 개 요	사용개시일	비고
계	6 건				
1	전농동 206 외 4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전농동 206, 제기동 519, 휘경1동 92, 용두1동 75-2, 답십리2동 66-24 일대	D=450~600% L=356m	94. 9. 30	
2	전농동 66 주변 하수 도 개량공사	전농동 66 일대	D=450~600% L=166m	94. 11. 30	
3	청량리2동 555 외 2개 소 하수도 개량공사	청량리 555, 205, 199 일대	D=350~450% L=304m	94. 11. 30	
4	정릉천변 치수대책 시 설공사	제기동 136, 1158 일대	D=300~1,200% L=1,178m BOX1.0×1.0 ~1.7×1.7 L=398m	94. 9. 30	

연번	공사명	위치	공사개요	사용개시일	비고
5	이문동 257 의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이문동 257, 251, 143 일대	D=450% L=192.5m D=600% L=25m	94. 12. 20	
6	신설동 129 의 3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신설동 251, 129, 용두동 39 일대	D=300~450% L=273m	94. 12. 28	

●서초구공고제1995-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자진반납)공고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를 행정처분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5. 1. 10

서 초 구 청 장

가. 자진반납 업체

일련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 고
1	83-19-2	수암건설	유명종	서초구 반포동 747-13	자진반납

한강관리사업소고시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1. 10

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4-148호

허가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94.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 납동 190선 한강	하천	322.85㎡	유선장 부대 시설(이동식 파고라 및 야 외무대)	1995.1.1 ~ 상 수원보호 지 정일까지 단, 상수원 보호 구역이 지정 되지 않을 경 우 95. 12. 31까지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 납동 190선	임익룡

<p>●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4-14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p>	<p>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1. 10 한강관리사업소장</p>
--	---

허가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 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4.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 남동 190선 한강	하천	126.3㎡	유선장 부대 시설(이동식 컨테이너)	1995.1.1 ~ 상수원보호 지정일까지 단,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95. 12. 31 까지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 남동 190선	임익룡

<p>●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4-15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p>	<p>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1995. 1. 10 한강관리사업소장</p>
---	--

허가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 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4. 12. 3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 사동 661 한강	하천	671.56㎡	유 선 장	95.1.1 부 터 상수원보호 지정일까지 단,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 을 시는 95. 12. 31까지 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 동 49-8	(주)쌍방울 개발 대표이사 조정현

<p>●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4-1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p>	<p>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1. 10 한강관리사업소장</p>
--	--

허가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94. 12.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89 한강	하천	2,467.83㎡	유 선 장	95.1.1 부터 상수원보호 지정일까지 단,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 되지 않을 시는 95. 12. 31 까지로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89	(주)삼덕 수상레저 대표이사 하 병 수

<p>●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4-15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p>	<p>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1. 10 한강관리사업소장</p>
--	--

허가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94.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8 한강	하천	958.4㎡	유 선 장	95.1.1부터 상수원보호 지정일까지 단, 상수원 보호 구역이 지정 되지 않을 시는 95. 12. 31까지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8	골드관광 (주) 대표이사 소 재 형

<p>●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4-1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p>				<p>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1. 10 한강관리사업소장</p>			
허가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94. 12.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 장동 177 한강	하천	522.88㎡	수상법당	95.1.1 부터 상수원보호 지정일까지 단,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을 시는 95. 12. 31 까지로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 장동 172	대한불교조계 종 방생법회 회장 이진호
<p>●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4-1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p>				<p>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1. 10 한강관리사업소장</p>			
허가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94.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 납동 190 한강	하천	858.24㎡	유 선 장	95.1.1부터 상수원보 호 지정일 까지 단, 상수원 보 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을 시는 95. 12. 31 까 지 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 동 190	(주)삼세동 대표이사 임익통

공원녹지관리사업소공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4-17호

도시공원시설관리위탁공고

도시공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관리사업소(남산공원) 공원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하였기에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덧붙임 : 관리위탁시설 현황

1995. 1. 10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95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 현황

남산공원관리사무소

연번	위탁사항				시설명	관리위탁기간	'95위탁료(원)	수탁관리자		비고
	위치	대지(m ²)	건물(m ²)	구조				주소	성명	
계	-	27,609.19	3,685.92	-	-	-	247,135,480	-	-	
1	중구 회현동1가 산 1-2	291 79 4.96	206.61 78.78 -	철근 CONC. 평육개	식물원 휴게실 숙사 선인장류 판매대	95. 1. 1 ~12. 31	6,032,600	중구 회현동1가 산 1-2	김용호	
2	"	39.01 9.92	39.01 9.92	시멘벽돌조와즙 철근 CONC	남산 간이매점 지하창고	"	830,300	도봉구 쌍문동 423-8	김영품	
2-1	"	20.35	9.45	알루미늄박스	남산간이매점분점	"	343,900	"	"	
3	"	120 24.14	117.96 23.14	연와조시멘와즙 철근 CONC	잠두매점 지하창고	"	4,613,000	용산구 후암동 244-86	박홍국	
	"	15.04	6.07	알루미늄박스	잠두매점분점	"	259,600	"	"	
4	"	162 33.06	124.8 29.92	시멘벽돌조와즙 철근 CONC	야외매점 지하창고	"	5,724,200	중구 회현동1가 산 1-2	최희순	
4-1	"	32.5	13.5	스테인리스박스	야외매점분점(1)	"	631,200	"	"	
4-2	남대문로5가 467	19.19	8.74	알루미늄박스	야외매점분점(2)	"	297,300	"	"	
5	예장동 산 5-6	49.59	65.45	블록조평육개	중앙매점	"	2,195,400	중구 예장동 산 5-6	김택규	
6	"	180	126	시멘벽돌조와즙	신약수매점	"	4,120,600	"	백주현	
7	"	180	100.53	연와조와즙	범바위매점	"	3,076,100	"	김경호	
8	"	20	20	스테인리스박스	팔각간이매점	"	444,400	용산구 용산동 2가 5	정용술	

50-41

제 1872 호

구

부

1995.1.10

50-42

연번	위탁사항				시설명	관리위탁기간	'95위탁료(원)	수탁관리자		비고
	위치	대지(㎡)	건물(㎡)	구조				주소	성명	
9	중구 남창동 205-5	112.6	126	시멘트벽돌조와즙	아동공원매점	95. 1. 1 -12. 31	3,565,600	중구 남창동 205-5	장인환	
10	용산구 후암동 30-66	300.83	299.87 옥상 203.31	철근 CONC 평 옥 개 옥상 차 광	남산휴게실	"	12,074,800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④ 8-605	김원준	
10-1	중구 회현동1가 산 1-2	20.72	9.72	스테인리스박스	남산휴게실분점	"	423,100	"	"	
11	용산구 용산동2가 산 1-1 외 1필지	310.85	262.81 옥상 137.85	철근 CONC 평 옥 개 옥상 차 광	팔각주차장휴게실	"	7,887,800	강남구 압구정동 414 미성④ 1-1103	송민중	
11-1	중구 예장동 산 5-6	21.45	10.35	스테인리스박스	팔각주차장분점	"	931,700	"	"	
12	"	39.01	39.01	시멘트벽돌조와즙	팔각간이매점	"	775,200	중구 예장동 산 5-6	김태현	
13	중구 장충동2가 산 14-21	39.01	39.01	"	장충간이매점	"	656,800	용산구 용산동 2가 8 한신④ 2-802	김명우	
14	산 7-22	39.01	39.01	"	순환도로간이매점	"	631,100	중구 신당3동 349-226	김경애	
15	196-2	119.8	71.74	연와조 평 옥 개	장충휴게실	"	7,042,100	중구 장충동2가 197	윤숙자	
15-1	197	25.01	6.51	스테인리스박스	장충휴게실분점	"	300,200	"	"	

제 1872 호

나

바

1995.1.10

0042

연번	위탁사항				시·설명	관리위탁기간	'95위탁료(원)	수탁관리자		비고
	위치	내지(㎡)	건물(㎡)	구 조				주소	성명	
16	중구 장충동2가 산 14-21	16.36 43.13	16.36 17.82	블록조평육개연와조슬래브	장충체육회운동기구보관창고	95. 1. 1 ~ 12. 31	400,000	강남구 논현동 145-10	김춘산	
17	용산구 한남동 산 10-16	165	96	시멘트벽돌조와즙	남산산악회관리실	"	1,800,000	성동구 자양동 한양④ 6-208	이주화	
18	중구 장충동2가 산 7-22	5,697	1,063.8	-	장충수영장	"	11,267,900	중구 필동2가 26	오인갑	
19	산 14-68	10,545.5	191.04 (경기진행실 40㎡)	-	장충테니스장	"	47,670,700	송파구 오륜동 88-2 제2체육관 108	김두환	
20	회현동1가 산 1-2	208	172.23	철근 CONC 평육개	식물원 탁구장	"	1,658,400	중구 회현동1가 산 1-2	김용호	
21	장충동2가 197	1,502.62	-	-	장충로라스케이트장	95. 1. 1 ~ 97. 12. 31	121,481,480	도봉구 도봉동 30-1 한선④ 103-801	안명섭	일반경쟁입찰
22	산 14-21	1,016.53	133.88	철근 CONC 슬래브	식호정(궁도장)	95. 1. 1 ~ 12. 31	면제	은평구 갈현동 421-6	김영규	도시공원조례
23	산 7-22	6,104	110.75	야구장 및 철근 CONC 슬래브	장충어린이야구장	"	면제	중구 장충동2가 197	정효현	제7조 제1항

50-43

제 1872 호

시

군

1995. 1. 10

인사발령

6급 이하 기술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국비→지방비)

●1995년 1월 1일자

영 제645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현팔 501018-1047627	지방임업주사	농지과	임업주사
2	장진수 581022-1541116	지방임업서기	"	임업서기
3	최병언 600518-17985151	"	"	"
4	김도형 650918-1351229	지방임업서기보	동대문구	임업서기보
5	배명권 660702-1541016	"	성북구	"
6	김현숙 620305-2010211	"	도봉구	"
7	명재철 600405-1464349	"	영등포구	"
8	전진구 630714-1347518	"	관악구	"
9	최상희 640318-2231111	지방사무보조원(필기10등급)	농지과	사무보조원 (필기10등급)

서울특별시

2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

●1995년 1월 1일자

영 제646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황철민	지방관리관 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직무대리	지방이사관
2	김동훈	지방관리관 청소사업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직무대리	"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3	반 상 균	지방이사관	구로구분구준비 (구청장) 요원	지방 부이사관
4	박 정 길	지방이사관	한강관리사업소장	"
5	신 동 우	지방부이사관 공보관	공보관 직무대리	지방서기관
6	임 성 수	지방부이사관 시립대학교 사무국장	시 립 대 학 교 사무국장 직무대리	"
7	목 영 만	지방서기관	내 무 국 (구·동사무진단반)	지방행정 사무관
8	박 계 병	지방시설부이사관 지하철건설본부 차장	지하철건설본부 차장 직무대리	지방시설 서 기 관
9	백 영 천	지방시설서기관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감리실장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감리실장 직대	지방토목 사 무 관
10	최 용 호	지방임업서기관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 산 공 원 관 리 사무소장 직무대리	지방임업 사 무 관

서울특별시장

94. 4/4분기 근속승진대상 승진임용

●1995년 1월 1일자

영 제647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박 찬 두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시 립 대 학 교	지방행정 서 기
2	윤 순 철	지방운전원 9등급에 임함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지방운전원 10등급

서울특별시장

6급 행정직 인사교류

●1995년 1월 4일자

영 제1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 찬 식 531212-1808312	내무국 (시정담당관요원) (95. 1. 4~95. 6. 30)	성 북 구	지방행정 주 사
2	황 중 익 530808-1047915	"	노 원 구	"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3	유 병 출 550302-1063416	내무국 (시정담당관요원) (95. 1. 4~95. 6. 30)	마 포 구	지방행정 주 사
4	정 학 조 530425-1055712	"	강 서 구	"
5	우 수 동 460425-1029411	"	강 남 구	"

서울특별시장

6급 이하 기술직공무원 전보

◎1995년 1월 1일자

영 제101호

연번	성 명	현 직		현 직	
		부 서	직 급	부 서	직 급
1	이 근 채	구 의 정 수 사 업 소		생 산 관 리 부 생 산 관 리 과	지방수도 토목주사
2	이 경 로	강 동 수 도 사 업 소		"	"
3	송 만 규	생 산 관 리 부 생 산 관 리 과		구 의 정 수 사 업 소	"
4	김 광 운	"		강 동 수 도 사 업 소	"

상수도사업본부장

기능직공무원 전보

◎1994년 12월 31일자

영 제102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 숙 경 700226-2024016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총 무 과	지방교원 (10등급)
2	박 상 주 420426-1031310	암사정수사업소	총 무 과	지방전기원 (10등급)
3	최 윤 석 610617-1001522	중부수도사업소	영 등 포 구	지방전기원 (10등급)
4	이 천 복 420813-1056720	선유정수사업소	청소사업본부	지방기계장 (7등급)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5	문정기 420125-1047215	은평수도사업소	청소사업본부	지방기계장 (7등급)
6	이상복 391130-1058312	남부수도사업소	청소사업본부	지방기계원 (9등급)
7	김종현 441119-1011411	구의정수사업소	도시시설안전 관리본부	지방기계장 (7등급)
8	이재근 480805-1243415	남부수도사업소	차량정비 사업소	지방기계장 (7등급)
9	이현호 541028-1108814	강동수도사업소	차량정비 사업소	지방기계원 (8등급)
10	박치서 480208-1010712	북부수도사업소	차량정비 사업소	지방기계원 (8등급)
11	한종구 560728-1476510	성북수도사업소	차량정비 사업소	지방기계원 (8등급)
12	방호익 660315-1929511	암사정수사업소	차량정비 사업소	지방기계원 (10등급)
13	박미라 540917-2654311	강남수도사업소	시립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지방위생원 (사역10등급)
14	전용화 460227-1011112	서부수도사업소	도봉구	지방사무보조원 (필기9등급)
15	정찬익 370615-1024021	북부수도사업소	중랑하수처리 사업소	지방조무원 (수도9등급)
16	신윤석 650524-1001012	선유정수사업소	정신병원	지방조무원 (필배10등급)
17	임윤임 660307-2006714	상수도사업본부 조사과	행정과	지방사무보조원 (타자10등급)
18	송기현 661002-2813514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시립대학교	지방사무보조원 (타자10등급)
19	김영란 660920-2017919	상수도사업본부 배수과	민방공경보 통제소	지방사무보조원 (타자10등급)
20	문명례 670831-2001714	강남수도사업소	종합건설본부	지방사무보조원 (타자10등급)
21	이재창 570810-1030110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민방공경보 통제소	지방통신원 (8등급)
22	이득원 620211-1019616	구의정수사업소	선유정수 사업소	지방조무원 (필배10등급)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23	황재향 650405-1777239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은평수도 사업소	지방기계원 (10등급)
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직공무원 직무대리 명령				
●1994년 12월 28일자			영 제42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문경재 600123-1325812	용산공원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시설부관리과	지방임업 주사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5급 기술직공무원 전보				
●1995년 1월 1일자			영 제1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서창기 510811-1408111	지방토목사무관 시설관리국 시설계획부 계획1과장에 포함	시설계획부 계획 1 과장 직무대리	지방토목 주사
2	이오영 520617-1018611	지방전기사무관 시설관리국 시설부 시설1과장에 포함	시설부 시설 I 과장 직무대리	지방전기 주사
청소사업본부장				
기술직 5급 공무원 보직 명령				
●1995년 1월 1일자			영 제44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박동순 500401-1468421	양묘사업부 양묘과장에 포함	양묘과	지방임업 사무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능직공무원 전보				
●1994년 12월 31일자				영 제43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한 근 천 411118-1231714	양묘사업부 시험연구과 근무를 명함	공원녹지관리 사 업 소 (도시시설안전 관 리 본 부)	지방기계장 (7등급)
2	정 창 수 560535-1023514	양묘사업부 시험연구과 근무를 명함	공원녹지관리 사 업 소 (교 통 방 송 본 부)	지방운전원 (9등급)
3	강 도 식 500608-1001024	남산공원관리사무소 근무를 명함	시 설 과	지방운전원 (9등급)
4	김 재 영 500420-1183116	서 무 과 근무를 명함	시 험 연 구 과	지방운전원 (10등급)
5	맹 철 재 420523-1067312	시설부 시설과 근무를 명함	남산공원관리 사 무 소	지방운전원 (10등급)
6	최 종 남 620610-1058121	서 무 과 근무를 명함	공원녹지관리 사 업 소 (내 두 국)	지방조무원 (집배10등급)
7	이 혜 선 640818-2069011	시설부 개발과 근무를 명함	양 묘 과	지방사무 보 조 원 (타자10등급)
8	김 계 연 680101-2011723	남산공원관리사무소 근무를 명함	개 발 과	지방사무 보 조 원 (타자10등급)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능직공무원 전보				
●1994년 12월 31일자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이 근 우 370401-1009210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전 입	지방기계장 6등급
2	문 을 경 520315-1006419	"	"	지방기계원 9등급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3	김선애 680122-2079110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전입	지방사무보조원 (타자)10등급
4	오혜정 620202-2229810	관리과 근무를 명함	'	지방사무보조원 (타자)9등급